

1. 개정이유

강등(일부 효력),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에 대해서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24. 3. 19.), 징계가중기간은 휴직에 따른 집행정지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함을 명시하는 한편, 공직사회 중대범죄 예방과 징계의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하여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양정 시 참작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가중기간 규정 정비(안 제6조)

- 징계가중기간은 휴직에 따른 징계처분 집행정지와 관계없이 처분일부터 기산하고, 징계가중기간의 계산방법 등 별도 규정

나.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다.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징계기준 개선(안 별표 1)

-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 양정기준 강화

라. 음주운전 징계기준 합리성 제고(안 별표 3)

-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보완

마. 징계양정 참작사항 보완(안 제2조, 제8조 및 별지)

- 징계 양정 시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친절·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및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참작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30. ~ 7.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 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혐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위(非違) 유형,
2.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3.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4.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5.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6. 평소 행실
7. 공적(功績)
8. 뉘우치는 정도
9.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민원인 등의 폭언

·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친절·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그 경위

11. 그 밖의 사정

제5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6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징계가중기간”이라 한다)”으로, “2단계”를 “최대 2단계”로,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를 “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가중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제6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징계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

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 :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을 “혐의자에 대한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제7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	----	-------	-------	-------

별표 1 제7호바목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별표 1 제7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마약류 관련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	----	-------	-------	-------

별표 1. 비고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호사목의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경징계 경징계 또는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감봉~견책 정직~감봉 강등~정직 해임~정직 해임~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	중징계	강등~정직

서 운전을 한 경우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강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나. 사망사고의 경우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해임~정직 파면~해임 해임~정직 파면~해임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중징계	파면~해임 해임~정직

별표 3에 비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교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의2호에 따른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말한다.
 - 자전거등 음주운전(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전거등 이외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제6호나목,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

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제4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속 (현재) (협의 당시)	직위(직급) (현재) (협의 당시)	성명
2. 비위행위 유형	가.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나.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다.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라.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해당함 []해당 없음		
	마. 성폭력범죄 []해당함 []해당 없음		
	바. 성매매 []해당함 []해당 없음		
	사. 성희롱 []해당함 []해당 없음		
	아.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해당함 []해당 없음		
	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차.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합니다) []해당함 []해당 없음		
	카. 소극행정 []해당함 []해당 없음		
	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파.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하.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거. 부정청탁이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당함 []해당 없음		
너.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상황 등		
4. 감경대상 공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 주의·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6. 그 밖의 사정	법 제75조의2제3항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 의견(□ 해당함 □ 해당 없음) ※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한다고 검토한 경우, '해당함'에 표기하고 구체적인 의견과 판단 근거를 제출합니다.		
	퇴직 예정일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근무경력 : 년 월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권자**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u><신 설></u>	<u>1. 비위(非違) 유형</u>
<u><신 설></u>	<u>2.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u>
<u><신 설></u>	<u>3.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u>
<u><신 설></u>	<u>4.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u>
<u><신 설></u>	<u>5.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u>
<u><신 설></u>	<u>6. 평소 행실</u>
<u><신 설></u>	<u>7. 공적(功績)</u>
<u><신 설></u>	<u>8. 뇌우치는 정도</u>
<u><신 설></u>	<u>9.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u>
<u><신 설></u>	<u>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친절·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그 경위</u>
<u><신 설></u>	<u>11. 그 밖의 사정</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생략)	제5조(징계의 감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	② -----

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 14. (생략)

1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③ (생략)

제6조(징계의 가중) ① (생략)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1. ~ 14. (현행과 같음)

15.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징계의 가중)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징계가중기간”이라 한다) -----

----- 최대 2단계 -----
-- 수 -----

-----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가중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1. 징계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 :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신 설>

제8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5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가중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혐의자에 대한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제7호는 제외한다)-----

<u>늪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 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 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 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u> ③・④ (생 략)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	---